

[별표 5]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(제17조제3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제4항, 제38조의2 관련)

입주자격	할증구간	할증율	
		최초 갱신계약 시	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%이하	73.5%초과 75%이하	10%	20%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%초과부터 70%이하까지	73.5%초과 77%이하	10%	20%
	77%초과 91%이하	20%	40%
	91%초과 105%이하	40%	80%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%초과부터 100%이하까지	100%초과 105%이하	40%	80%

*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자는 105% 초과시 할증률 80% 적용